

발급번호 : 0507-5808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『축산물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6년 09월 14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진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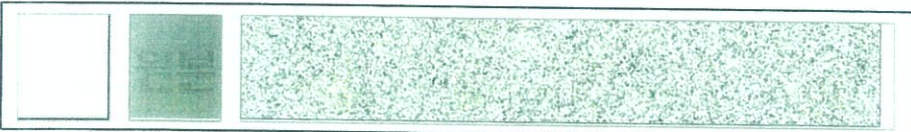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6년 09월 11일
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 043-535-3412	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128101070(1100)	1+	110128101070(1119)	1+	110128101070(1134)	1+
110128101070(1101)	1	110128101070(1120)	1+	110128101070(1135)	1
110128101070(1103)	1+	110128101070(1121)	1+	110128101070(1136)	1+
110128101070(1104)	1+	110128101070(1122)	1	110128101070(1138)	1+
110128101070(1105)	1	110128101070(1123)	1	110128101070(1139)	1+
110128101070(1106)	1+	110128101070(1124)	1+	110128101070(1140)	1+
110128101070(1107)	1	110128101070(1125)	1+	110128101070(1141)	1+
110128101070(1108)	1+	110128101070(1126)	1	110128101070(1142)	1+
110128101070(1110)	1+	110128101070(1127)	1+	110128101070(1143)	1+
110128101070(1111)	1	110128101070(1128)	1	110128101070(1144)	1
110128101070(1113)	1+	110128101070(1129)	1+	110128101070(1145)	1+
110128101070(1115)	1+	110128101070(1130)	1	110128101070(1146)	1+
110128101070(1116)	1	110128101070(1131)	1+	110128101070(1147)	1
110128101070(1117)	1	110128101070(1132)	1+	110128101070(1148)	1+
110128101070(1118)	1+	110128101070(1133)	1+	110128101070(1149)	1

전체 : 45두 (1+ 등급 : 30 1 등급 : 15 2 등급 : 0 동외등급 : 0)

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6-09-14 10:31:15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품내역은 "축산물 위생관리법"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원본대조필



제 충북10-20260911-0012-0 호

도축검사증명서

- 가축의종류 : 돼지
-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102 (110128101070)
- 종량 : 자육 8851 kg, 내장 등 기타 1428 kg
- 작업장명 : (주)팜스코
- 검인번호 : 충북10
- 도축일 : 2026년 09월 11일
- 도축의뢰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통리 575-1

성명 김남욱

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]여, [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 국가명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33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6년 09월 11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 : 양재노 (서명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4069)

